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12월 23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홍영기 통상법무과 과장(044-203-5770), 주현수 사무관(044-203-5772)

우리나라 유정용 강관 미국의 반덤핑조치 세계무역기구(WTO) 제소

- 대미 수출액 8억불 이상 제품의 수출애로 해결 위한 첫걸음

□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이 고율의 **반덤핑관세**(9.89~15.75%)를 부과한 조치(7.11)가 세계무역기구(이하 WTO)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, 12. 22(월)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.

○ 지난 8. 13. 강관 수출업계***는** 미국의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WTO 제소를 요청해왔다.

* 현대하이스코(15.75%), 넥스틸(9.89%), 세아제강, 휴스틸, 아주베스틸, 일진 등 기타(12.82%)

○ 정부는 법리 분석,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분쟁해결양해(DSU)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12. 22.(월)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.

□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조속히 철폐를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,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.

* WTO 분쟁해결양해 제4.3조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(미국)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,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제소국(우리나라)은 WTO 패널설치 요청 가능

□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,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의무가 발생한다.

○ (덤핑마진 계산방법)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 유정용강관의 약 98%가 미국으로 수출되므로 내수가격과 비교가능한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(Constructed Value)*에 의한 덤핑율을 산정했다.

* 구성가격(CV) = 제조원가(COM) + 판매관리비(SG&A) + 이윤(Profit)

- 다만, 미 상무부가 예비 판정시에는 우리 국내 기업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 가격을 산정했다가, 최종 판정시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*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계산함으로써 고율의 덤핑율이 산정했다.

* 예비판정과 달리 적정이윤율로 다국적기업 **Tenaris社의 이윤율(26.11%)**을 적용

○ (절차적 방어권 보장), 미 상무부는 세아제강, 휴스틸, 일진 등 우리 업계가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,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, 항변기회 없이 기타업체로 분류돼 12.82%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.

□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'13년 기준 대미 수출은 894천 톤(8.17억 불) 규모로,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, 우리업계가 매년 고율의 덤핑 관세*를 부담해야 하며, 미 연례재심 조사에도 매년 대응해야 한다.

* '13년 수출량 기준으로 연간 관세납부액이 1억불을 상회할 전망

□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,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 /끝/

※ 붙임

- 참고1- 제소경과 및 반덤핑관세 부과시 업계 영향
- 참고2- WTO 분쟁해결절차도 및 한미간 WTO 분쟁현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홍영기 과장(☎010-5560-44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제소경과 및 반덤핑관세 부과시 업계 영향

1 제소 경과

일 시	주요 일정
13. 7. 2	미 철강업계 제소장 접수
13. 7.22	(DOC) 조사개시
13. 8.16	(ITC)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
14. 2.18	(DOC) 덤핑 예비판정
14. 7.11	(DOC) 덤핑 최종판정
14. 8.22	(ITC) 산업피해 최종판정

2 반덤핑관세 부과시 업계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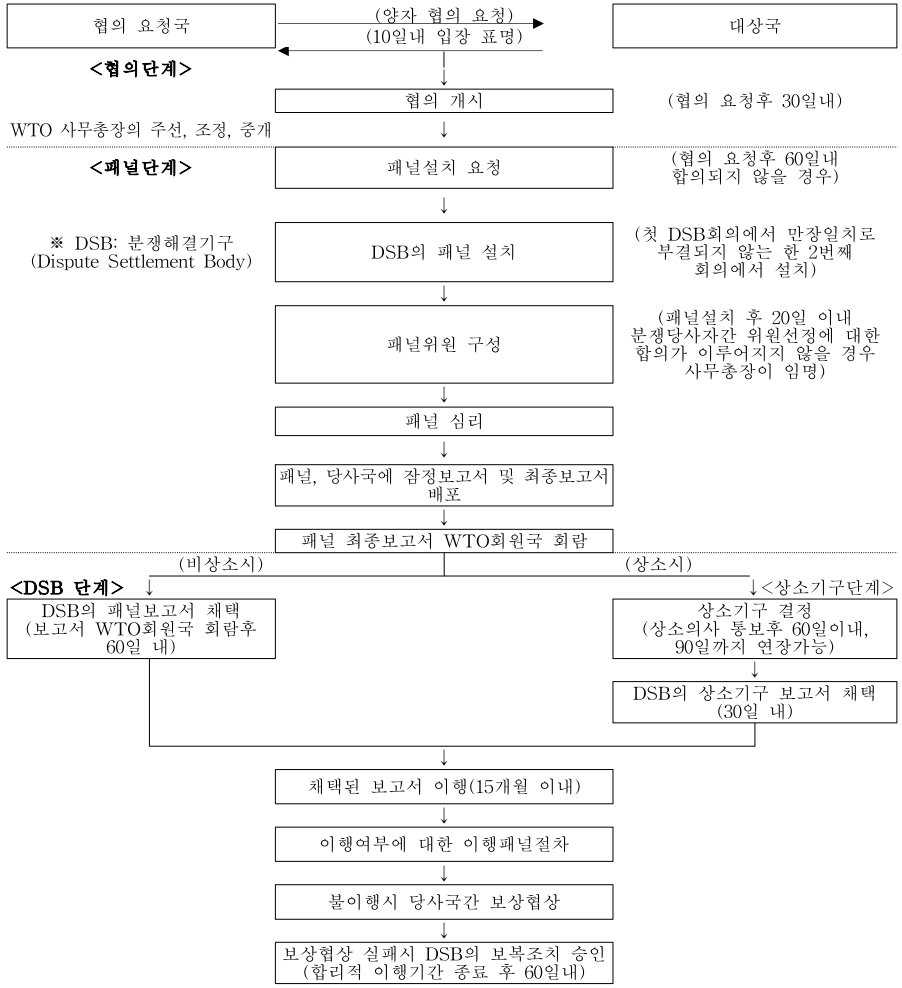
□ 13년 수출액(8.17억불) 기준으로 연간 1억불 규모의 덤핑관세 납부

○ 관세납부에 따른 타국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열위로 수출 감소 등 영향 불가피

□ 여타 수출경쟁국인 인도 등에 비해 고율의 관세(9.89%~15.75%)를 부과받아 비교열위에 처하게 될 우려가 높음

국 가 명	예비판정(2.18)	최종판정(7.11)
한 국	0%	9.89～15.75%
베 트 남	9.57～111.47%	24.22～111.47%
인 도	0～55.29%	2.05～9.91%
사 우 디	2.92%	2.92%
대 만	0～2.65%	0～2.52%
터 키	0～4.87%	0～35.68%
우 크 라 이 나	5.31%	6.73%

참고2 WTO 분쟁해결절차도 및 한미간 WTO 분쟁현황



우리나라와 미국의 WTO 분쟁 현황(2014.12월 기준)

◇ WTO 설립 이래 484건의 분쟁이 발생하였으며, 그중에서 미국이 당사자인 분쟁은 228건(제소 106건, 피소 122건)으로 전체 WTO 분쟁의 **약 50%**를 차지

◇ WTO 설립 이래 우리나라는 총 30건의 분쟁에 당사자로 참여하였으며, 그중에서 **16건이 미국과의 분쟁** (16건 제소 중 10건, 14건 피소 중 6건)